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01658

<http://mindob.com>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11.30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28

mindobfc@gmail.com

◆ 텔보고된이 정보공개서 ◆

(주)민도비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04 . 24

(주) 민도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41-7 마블러스원 311호

■ 대 표 전 화 : 02-3392-5455

■ 팩 스 : 02-3392-5456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본부 02-6339-124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6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9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9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5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9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0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1
IX.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3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민도비	텔보고된이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90,311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11.13	2019.11.19.	권영관	02-3392-5455	02-3392-5456
	법인등록번호	110111-7290820	사업자등록번호	796-88-0141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대표이사)	권영관	텔보고된이	대표이사:권영관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90,311호 대표전화번호:02-3392-5455 대표팩스번호:02-3392-5456
사용인(임원)	고운삼		
사용인(임원)	박정영		
사용인(임원)	김민석		
사용인(임원)	권인숙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텔보고된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생선 고등어와 우리민족의 전통 음식인 된장의 합성어
상 호	텔보고된이 OO점	
상표(서비스표)	텔보고된이	등록번호:41-0370923
	텔보고된이생선구이전문점 	등록번호:40-16607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02,784	591,096	-88,312	1,290,702	-8,774	8,437
2022년	402,936	356,733	46,203	1,396,415	81,645	134,515
2023년	522,682	333,738	188,944	1,829,674	162,232	142,741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권영관	대표 이사	2016.1. ~ 2019.11.	텔보고된이생선구이 대표	대표
			2019.11. ~ 현재	(주)민도비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고운삼	전무 이사	2017.1. ~ 2018.5.	텔보고된이생선구이 이사	주방
			2019.11. ~ 현재	(주)민도비 전무이사	유통/구매
	박정영	이사	2017.6. ~ 2018.5.	DAIZEN(주) 대표이사	대표
			2019.11. ~ 현재	(주)민도비	가맹사업
	김민석	이사	2010.6. ~ 2019.12.	호남 해물탕	대표
			2019.11. ~ 현재	(주)민도비	인사/교육
	권인숙	이사	2016.3 ~ 2019.08	마케팅(SNS) 프리랜스	홍보
			2019.11. ~ 현재	(주)민도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1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사용기간)
텔보고된이	서비스표	2016.09.07.	41-0370923	성미양	2026.09.07. (2026.09.07)
 (텔보고된이 생선구이전문점)	서비스표	2020.11.09	40-1660700	성미양	2030.11.09. (2030.11.0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텔보고된이] 가맹사업 현황

1. [텔보고된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9년 11월 28일

** 「텔보고된이 (본 점)」 을 시작한 날: 2019년 12월 01일
「텔보고된이(노원직영점)」 을 시작한 날: 2019년 11월 28일

2. [텔보고된이]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민도비	텔보고된이	권영관	2019.11.28.~현재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90,311호

3. [텔보고된이] 업종

영업표지	업종	
텔보고된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생선구이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텔보고된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1	2	4	2	2	5	2	3
서울	1		1	2	1	1	2	1	1
경기도	2	1	1	2	1	1	3	1	2

5. 바로 전 3년간 [텔보고된이]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					1
2022		1				2
2023	2					2

*그 근거자료는 별첨2와 같습니다.

6. [텔보고된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텔보고된이]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VAT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	321,668	14,248					
경기	1	422,845	12,127					
서울	1	220,491	15,679					

[당사의 가맹사업자 평균 연간 매출액은 가맹점별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합니다.]

8. [텔보고된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텔보고된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2	1,062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텔보고된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텔보고된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국민은행	무교지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번지	02-3783-0878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서 작성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민도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당사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귀하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귀하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귀하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텔보고된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단위 : 천원, VAT포함)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가맹비	10,000	계약서 작성일
교육비	3,000	
합 계	13,000	

반환조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반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금 입금 후 설비공사를 위해 이행했던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비용을 정산 후 15일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한다. 단,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계약이행 보증금 외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교육 기간의 교육비용

2) 보증금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조건
보증금	10,000	계약서 작성일	가맹금 미지급, 채무액,로열티,교육비,광고 판촉비등의 채무액 및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 종료시 정산 후 반환
비고	직전년도 「털보고된이」 운영매장 1주일 평균 상품 공급액의 1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금액	
합 계	23,000	
가맹비	10,000	
교육비	3,000	
보증금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금액	3.3㎡(약1평)		
합계		74,470	2,757		
인테리어	협력업체	40,496	1,500	계약시	공사 5일전 계약취소
간판	협력업체	7,760	287	계약시	공사 10일전 계약취소
주방설비/집기	협력업체	16,303	604	물품공급 3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의자 및 탁자	협력업체	3,711	137	계약시	상품 미공급시
POS	협력업체	0	0	매월60,000원	상품 미공급시
CCTV	협력업체	1,200	44	물품 수령일	상품 미공급시
초도 물품 비용	가맹본부	5,000	185	물품 수령일	상품 미공급시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감리비 : 인테리어 및 간판등의 설비는 가맹사업 동일성을 위하여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하는 사양에 따라 설비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당사의 설계 및 감리를 받아야 하며, 이의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시공 매뉴얼 및 도면 감리, 시공관리 감독 등의 비용으로 3.3㎡(1평)을 기준으로 일금 삼십만원정(₩300,000/부과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별도비용 : 철거, 냉난방기, 가스 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주방온수기, 외부 duct, 인허가, 전화개설, TV시청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 비용은 귀하가 자체 부담하여야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주체 : 가맹사업자 지원: 당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맹 희망자가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점포선정에 있어서 최종 결정은 가맹 희망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털보고된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가맹금 납부방법

영업개시 이전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비 및 집기 등의 대금 결제 시 일시불 결제가 어려운 경우 당사와 협의 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설비	광고 시행전 사전 협의	광고 미시행시	광고시행후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전체 수수료의50%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의 2%	매월 5일	계약해지	경과기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200	교육실시 7일전	교육 미실행	교육실시 후	교육필요 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협력업체	설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기한 전 취소	취소기한 경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따른 간판변경 비용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 하여 협의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실비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기한 전 취소	취소기한 경과	교체보수 필요 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 수 등을 감안 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 정

2)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사항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틸보고된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틸보고된이]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금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계약보증금 금 10,0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 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텔보고된이]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사용하지해서는 안된다.
- 매뉴얼등 가맹본부로부터 대여 및 제공 받은 모든 문서는 반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한다.
-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 정보 및 기타 홍보 사이트를 삭제하여야한다.
- 가맹본부는 위의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이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맹사업자가 차입한 보증금으로부터 변제 충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텔보고된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및 부재료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다)부자재 직전 사업연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상기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당사는 [탈보고된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당사가 [탈보고된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구이류	고등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삼치			
	이면수			
	갈치			
	가자미			
	적어			
찌개류	우렁된장			
	순두부			
	돼지김치			
	참치김치			
	알탕			
그외	고등어조림			
	돼지불고기			
	오징어볶음			
	양념게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물건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털보고된이의 다른 가맹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NO	상품 · 용역	권장가격	NO	상품 · 용역	권장가격
1	고갈비백반	10,000	12	우렁된장찌게	8,000
2	삼치구이백반(반마리)	11,000	13	순두부찌게	8,000
3	삼치구이백반(한마리)	17,500	14	돼지김치찌게	8,500
4	이면수백반	13,500	15	참치김치찌게	8,500
5	가자미백반	12,000	16	돼지불고기백반	9,000
6	갈치구이백반	16,000	17	오징어볶음	10,000
7	모듬생선구이(2인)	30,000	18	양념게장	10,000
8	털보고된이정식(2인)A	23,500	19	계란찜	5,000
9	털보고된이정식(2인)B	22,000	20	콜라,사이다,환타(355ml)	1,500
10	소뚝불고기	9,500			
11	알탕	9,5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생선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텔보고된이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4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맺은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판촉 및 영업을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합니다. 단, 귀하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타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5)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점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온라인을 통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별첨4]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28%	72%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털보고된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단,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설비 관리감독비 등 당사와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개점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표준 레시피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당사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하여 제시한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가맹본부로부터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당사의 동의 없이 5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휴업을 한 경우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테리어, 설비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교체 및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당사가 제공한 원재료를 전용하거나, 제3자가 제공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와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
○가맹사업자가 당사의 매뉴얼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거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로열티를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로열티를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맹 계약 기간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营업을 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3회이상 상품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유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

계 된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일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당사에서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이전 범위	양도 절차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사업자가 30일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포함,30일가량소요)→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명시)→승인 시 대리 경영
업무위탁	불가능	-	

--	--	--	--

당사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귀하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생선구이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30일전에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	연중 무휴 영업	연속5일 이상 휴업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별지첨부[3] 와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위반시 책임
서비스점검 (10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 내역 점검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S/V	상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청결도(19항목)		1회/월	S/V	
품질 관리(5항목)		1회/월	S/V	
안전관리(5항목)		1회/월	S/V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텔레보그된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전국단위또는 지역단위 광고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물 광고	가맹본부 50% 가맹사업자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영업이 부진한 지역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방법/시기/횟수 등에 관하여 당사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규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 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일금 삼천만원정(W30,000,000부가세없음)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9조 2항,9항,10항,13항,17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이 해지 될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일금 삼천만원정(W30,000,000부가세없음)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위의 가맹계약서의 구체적인 가맹해지에 따른 위반 내용은 이하와 같다.

- 제19조2항: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제19조9항: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당사가 제공한 원재료를 전용하거나, 제3자가 제공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제19조10항:당사와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

- 제19조13항:가맹 계약 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행하는 경우
- 제19조17항: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1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지정 금융 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10p 참조]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등 시공비 산출 - 시공계약 체결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인테리어 시공	D-24~5(20일)	[11p~12p참조]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가구 제작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개점 준비	- 공사 완료		
	- 초도물품입고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및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

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 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 갱신 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불가피한 경우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계약 종료 전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합니다.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비용부담을 요구 할 수 없으며, 가맹사업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방문→경영진단→경영지 도 계획서 작성→가맹점 사업자에 경영지도→가맹 점사업자 개선 이행	가맹본부 부담	비 정기적으로 시행 할 수 있음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부담	문의 :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텔보고된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텔보고된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매장 경영 마인드 교육 음식 가공 및 조리교육 등 개점을 위한 교육 전반	이론 및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경영 개선 실무 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추후공지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텔보고된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약2주	3,0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사업자가 개점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며,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점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별첨5]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텔보고된이(본점)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81길 22-22, 1층
2	경기	텔보고된이 신세계백화점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25, 지상 2층
3	경기	텔보고된이 신세계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지하2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99,083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 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문의》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부 : 02-6339-1247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또는 가맹거래과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 0 44-200-4239 ~ 4241

가맹거래과 : help@ftc.go.kr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http://franchise.ftc.go.kr>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직영점및가맹점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가맹점포 영업장 관리 체크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5-1] 직영점 사업자등록증

5-1-1:텔보고된이(본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5-1-2:텔보고된이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지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